

의안번호	제 547 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발의자	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0년 10월 5일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허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7
----------	-----

발의연월일 : 2020년 10월 5일  
발 의 자 : 허창원, 박형용, 이숙애  
이상욱, 이의영, 장선배  
송미애 의원

**1. 제안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발적 기부 활성화 및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 적용범위: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도지사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경우
- 나. 기부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다.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82호
- 다. 협의 :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 라. 비용추계 : 붙임

##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성숙한 기부문화의 조성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기부자 관리 등)** ① 도지사는 기부금품 관련 업무 부서에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부자에게 기부 사실을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기부자 예우)** ① 도지사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2.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도지사 표창장 및 감사장 등 수여
  4. 그 밖에 충청북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② 도지사는 특정장소 또는 인터넷 상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기부자를 선정하여 그 업적 등을 게시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소지하고, 도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의사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도 기부문화 확산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행정부지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위원장이 정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차관인 부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도 및 시·군·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

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 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 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기탁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사항을 정하여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수당(서면심의 기준)

##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수당 등) ※ 관련조문 : 붙임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충청북도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안전심사 수당(서면심의)
  - 심의 시 위촉위원 참석 : 6명(평균)
  - 심사 건수 : 26건(평균)

### 나. 추계 결과

- 안전 심사 수당 30,000원 × 6명(위촉직 위원수\*) × 26건 = 4,680천원

### 다. 재원조달방안

- 위원회 수당 도비 100%(POOL)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기부심사위원회 심사수당	23,400	4,680	4,680	4,680	4,680	4,680

## 6. 작성자 :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최재훈